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안 번호	39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11일

발 의 자 : 최상진 의원

찬 성 자 : 이강무 의원, 김영심 의원
장종례 의원, 김행주 의원
곽노상 의원, 장원만 의원

1. 주 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마.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바. 개인형 이동장치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
- 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 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차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차. 개인형 이동장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 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파.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 협의 : 소관부서(교통과) 협의 완료
- 예산조치 : 예산 조치 필요
- 관계법규
 - 「도로교통법」 제 2조 및 제11조, 제13조의 2, 제50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조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1. ~ 18. (생 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2. ~ 33. (생 략)

[전문개정 2011. 6. 8.]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 ③ (생 략)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⑤ ~ ⑥ (생 략)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0. 6. 9.]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③ (생략)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⑤ ~ ⑥ (생략)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20.] [행정안전부령 제353호, 2022. 10. 20., 일부개정]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제2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